
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도입에 대한 의견

2020. 11

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도입 반대

1. 제도 개요

- 정부는 지난 8월 31일 개인유사법인*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(이하 유보금 배당간주세)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(제104조의33 신설)을 국회에 제출

*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%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

유보금 배당간주세 개요

- 목적 :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 방지
- 적용대상 :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80% 이상 법인
- 과세방식 : 배당간주금액 × 배당소득세율
 - * 배당간주금액 = 초과 유보소득(유보소득-적정 유보소득) × 지분비율
 - * 유보소득 : 각 사업연도 소득 + 가산항목(과오납 환급금 이자 등) - 차감항목(이월결손금·법인세·배당금 등)
 - * 적정 유보소득 : [(유보소득 + 배당금) × 50%] 또는 [자본금의 10%] 중 큰 값

2. 중견기업계 의견: 유보금 배당간주세 신설 반대

- 중복과세 성격을 지닌 과세이며,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우려

- 법인의 이익에 대해 이미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했는데, 여기에 유보금 배당간주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동일원천의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 성격을 지니고 있음
- 특히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(중소 제외)은 법인세에 투자상생협력세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보금 배당간주세가 신설될 경우 과세 부담이 중첩됨
 - 법인세와 투자상생협력세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하고 유보금 배당간주세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지만, 사실상 과세대상만 다를 뿐 기업의 소득에 대해 세 가지 세금이 부과

- 또한 기업은 유보금 배당간주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로 배당을 집행하는 등 사내유보금 유출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
- *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제도와 유사한 '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'는 재무구조 개선 및 법인세 과세체계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1년말 폐지

□ 중견기업의 조세부담 가중으로 투자 위축 및 성장저해 우려

- 중견기업은 세 가지(법인세, 투자상생협력세, 유보금 배당간주세)의 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조세부담 급증 우려
-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*은 18.5%로 매출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이 기타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효세율은 더욱 증가
- * 기업규모별 실효세율(조세수첩) : ('17) 상출 17.1%, 중견 17.5%, 중소 12.8%, 기타 19.3%
('18) 상출 18.2%, 중견 18.7%, 중소 13.5%, 기타 19.9%
('19) 상출 21.2%, 중견 18.5%, 중소 13.4%, 기타 20.7%
- 투자상생협력세 과세대상 법인 및 세수도 증가하고 있으며, 중견기업의 조세부담도 급증('16: 59개 172억원 → '19: 364개 1,444억원)

<미환류소득 산출세액 추이>

(단위: 개, 억원)

| 구 분 | 2016 | | 2017 | | 2018 | | 2019 |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|
| | 기업수 | 금액 | 기업수 | 금액 | 기업수 | 금액 | 기업수 | 금액 |
| 중견 | 59 | 172 | 295 | 904 | 364 | 1,583 | 364 | 1,444 |
|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| 26 | 84 | 151 | 1,238 | 194 | 1,750 | 204 | 2,427 |
| 그 외 기업 | 73 | 277 | 383 | 2,137 | 355 | 3,787 | 410 | 4,673 |
| 총합계 | 158 | 533 | 829 | 4,279 | 939(26) | 7,191(70) | 978 | 8,544 |

주1) 출처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이며, ()는 중소기업의 미환류소득 과세대상 및 산출세액
 주2) 그 외 기업은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도 포함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

- 유보금 배당간주세가 신설될 경우 중견기업 81.8%('18년 기준 4,635개 중 3,793개)가 비상장사이며, 비상장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조세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

- 세 가지 과세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, 중견기업은 이익의 약 28.6%*를 세금으로 부담하며,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인 25%보다 높은 세율로 이토록 과중한 조세부담은 중견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저해 할 것

* 중견기업 조세부담율 법인세 실효세율 18.7%, 투자상생협력세 3%¹⁾, 배당간주세 5.5%

<유보금 배당간주세 신설시 중견기업의 조세부담 예시(세부내용 첨부 참조)>

| | |
|--------------|--|
| 수익(사업소득) | 100억원 |
| 법인세 | 1천만원 + 98억원 × 20%(법인세율) = 19.7억원 |
| 투자상생협력세 | [100억원 - 19.7억원(법인세)] × 20% × 15% = 2.4억원 |
| 유보금 배당간주세 | 유보소득 : 100억원 - 19.7억원 - 2.4억원 = 77.9억원 적정유보소득 = ①, ② 중 큰 값 ① 유보소득 × 50% : 39.0억원 ② 자본금 × 10% : 10억원 초과유보소득 39.0억원 × 배당소득세 14% = 약 5.5억원 |
| 총조세 부담액 | 국세(19.7억원+2.4억원+5.5억원)+지방세(2.8억원) = 30.4억원 |

주1) 계산편의를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100%, 자본금 1백억원, 자기자본 5백억원, 투자-상생협력 지출금 0원으로 가정

- 중견기업은 자금조달 시 내부 유보자금 비중이 65.2%*로 높아 유보금 배당간주세 신설시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본축적이 어려워 중견기업의 투자 및 지속성장을 저해할 것

* 중견기업 자금조달원 : 내부 유보자금 65.2%, 시중은행 차입 23.5%, 회사채 발행 2.2%, 정부정책자금 활용 2.0% 順('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)

□ 광범위한 특수관계인 적용 문제

- 정부는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에 대해 과세형평 차원에서 배당간주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%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“개인 유사법인”으로 정의
- 세법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과 임원 및 임원의 친족 등을 포함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어 “개인”과 유사한 법인으로 보기 어려움

1) 투자상생협력 관련 지출이 없을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과 기업소득이 유사한 수준이라면 법인세율이 약 3% 인상되는 효과가 유사할 것(김학수, 『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: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』, 기획재정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, 2020.9)

*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

- ① 법인세법 시행령(제2조제5항) : 임원의 임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친족,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와 친족, 법인의 임직원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 등
-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(제1조의2) : (친족관계)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 등 (경제적 연관관계) 임원과 사용인 및 그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
-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(제2조의2) :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의 친족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배우자, 사용인, 보인 또는 본인의 친족 등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(해당 기업의 임원 및 퇴직임원을 포함) 등

□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

- 이익의 배당 여부는 회사의 경영 전략적 판단이며, 배당하지 않는 유보금은 현금성 자산이나 공장·기계설비·토지 등에 투자되어 유·무형자산으로 존재
- 따라서 기타 자산으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배당을 할 수 없음에도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간주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조세원칙에 위배

□ 적정 유보소득의 기준 문제

- 사내유보금 적립 이유는 경기변동·코로나 19·천재지변 등과 같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, 장기 투자 목적, 차입 목적을 위한 부채비율 감축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음
- 중소·중견기업은 기업 재무사정에 따라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, 당해 기업소득이 흑자라고 해도 급작스런 적자전환을 대비하여 유보금 비축이 불가피한 상황
- * 중견기업 주된 경영애로 '자금조달 곤란' 응답 비중 : ('15) 11.6% → ('16) 14.0% → ('17) 13.4% → ('18) 14.7% → ('19) 18.1% (중견기업 실태조사)
- 이렇듯 업종별·기업별 사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적정 유보소득을 '유보소득의 50%' 또는 '자본금의 10%' 중 큰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

□ 기존 정책 개편 기조와 배치

- 정부는 舊기업소득환류세제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개편하면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시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애고, 투자와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독려한 바 있음
- 유보금 배당간주세가 도입되면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배당이 확대될 수 있으며, 최대주주 지분이 80% 이상인 개인 유사법인의 특성 상 소수의 주주에게만 이익이 환류될 것임
 - 이는 유보금을 활용한 투자·고용 등을 위축시켜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, 기업의 이익을 투자·고용·상생협력에 더 많이 환류하려던 기존 정책 개편 기조와도 맞지 않음

□ 유보소득 배당간주세를 부과하는 해외 사례는 없음

- 정부는 유사사례로 일본·미국 사례를 제시²⁾하고 있으나, 이는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이며 주주에게 미실현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유보금 배당간주세와 다름

<유사 제도 비교>

| 국가 | | 주요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일본 (동족회사 유보금 과세) | |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지분을 50% 이상 보유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10~20% 추가 과세 |
| 미국 (인적 지주회사세) | | 주주 5인 이하가 지분을 50% 이상 보유하고, 수동적 소득이 60% 이상인 법인의 유보소득에 20% 추가 과세 |
| 한국 | 투자상생협력세 |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법인(중소 제외)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20% 세율로 추가 과세 |
| | 유보금 배당간주세 (신설 예정) |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을 80% 이상 보유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부과 |

2)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

첨부

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 도입시 세부담 계산식

○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 및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에 모두 적용되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,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100% 이상인 과세표준은 100억원의 A기업으로 가정(계산의 편의를 위해 투자, 임금증가, 상생협력 활동은 0원으로 설정)

① 법인세 : 19.7억원

- 과세표준 100억원 구간 법인세율은 20%
- 공제·감면금액을 무시하고 세율만 고려할 경우 : 19.7억원

② 투자상생협력촉진세 : 2.4억원

- 기업의 투자, 임금증가, 상생협력활동금액 0원
- 과세방식 : ㉞ 선택
 - ㉞ [기업소득 × 65% - (투자 + 임금증가 + 상생협력)] × 20%
 - ㉞ [기업소득 × 15% - (임금증가 + 상생협력)] × 20%
- ㉞ : [과세표준(100억원)-법인세(19.7억원)]×15%×20%=2.4억원

③ 배당소득세 : 5.5억원

- 유보소득 : 100억원-19.7억원-2.4억원=77.9억원
- 적정유보소득 : ㉞, ㉞ 중 큰 금액이므로 ㉞ 적용
 - ㉞ (유보소득 +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) × 50% : 39.0억원
 - ㉞ 자본금 × 10% : 50억원
- 초과 유보소득 : 유보소득-적정유보소득=27.9억원
- 배당소득세 : 초과 유보소득×지분율(100%)×배당소득세율(14%)=3.9억원

④ 지방세 : (① + ② + ③) × 10% = 2.6억원

○ 과세금액 : ① + ② + ③ + ④ = 28.6억원